

#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2. 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11.18. 김영미 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 2016.11.21.
-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16.12.5.)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영미 의원

### 가.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의 혈액을 대가없이 제공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인 헌혈의 자발적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책무(안 제3조)
- 2)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3)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안 제6조)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의 대표발의 외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2016년 11월 18일 제안되었고, 11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 매체나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